

제329회 임시회
2014.04.14.(월)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04. 14. (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수완 의원 외 6명

나. 발의일자 : 2014년 3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14년 4월 2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4월 8일

(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수완 의원)

가. 제안이유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지원 조례’)
- ‘유기[Organic]’, ‘유기식품’, ‘사업자’ 등의 용어 신설(안 제2조)
- 사업자의 책무 규정 보완(안 제4조)
- 친환경인증 기여도 평가항목으로 ‘친환경 인증면적 증가실적’ 신설(안 제12조제3항제7호)
- 친환경농산물 현장체험행사 지원 근거 마련(안 제13조제3항)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나기성)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의 친환경농업과 유기식품등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의”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친환경농업으로”를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론이나”를 “이론 또는”으로 한다.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기[Organic]”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5. “유기식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 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사업자”란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육성계획을 토대로 친환경농업과 유기식품 등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유기 식품 등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5호 중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조”를 “법 제8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을“(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 생산·유통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중 “친환경농산물”을 각각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친환경 인증면적 증가실적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우선구매와 소비촉진)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농업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과 농업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의 소비촉진을 위해 시장개척, 수출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자나 학교급식 등 단체 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체험행사 등 홍보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u></p>	<p><u>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 업육성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 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 북도의 친환경농업과 유기식품등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u>이의</u>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 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 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 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 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p> <p>1. ----- ----- -----<u>그</u>----- ----- ----- ----- ----- -----.</p>

현 행	개 정 안
<p>2. “친환경농산물”이란 <u>친환경농업으로</u>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p> <p>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u>이론이나</u>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p> <p>(신 설)</p> <p>(신 설)</p>	<p>2. ----- <u>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u>-----.</p> <p>3.----- ----- -----<u>이론 또는</u>----- -----.</p> <p>4. “유기[Organic]”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화하여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p> <p>5. “유기식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육성계획을 토대로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p> <p>6. “사업자”란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육성계획을 토대로 친환경농업과 유기식품 등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친환경농업실천계획의 내용)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친환경농업실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4. (생략)</p> <p>5. <u>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소비촉진 방안</u></p> <p>6. ~ 7. (생략)</p>	<p><u>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등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5조(친환경농업실천계획의 내용)</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u></p> <p>-----</p> <p>6. ~ 7. (현행과 같음)</p>
<p>제6조(친환경농업실천계획의 추진)</p> <p>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실천 계획을 수립한 후 <u>농림수산식품부장관</u>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시장·군수는 <u>법 제7조</u>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도의 실천계획을 토대로 시·군의 실천계획을 세운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제6조(친환경농업실천계획의 추진)</p> <p>① -----</p> <p>-----<u>농림축산식품부장관</u></p> <p>-----.</p> <p>② ----- <u>법 제8조</u>-----</p> <p>-----</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제7조 ~ 제8조(생 략)	제7조 ~ 제8조(현행과 같음)
제9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제9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p><u>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u>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u></p>
제10조 ~ 제11조(생 략)	제10조 ~ 제11조(현행과 같음)
제12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제12조(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
<p>① 도지사는 <u>친환경농산물</u>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나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u>생산·유통지원) ① -----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 -----</u> ----- -----.</p>
<p>② <u>친환경농산물</u>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p>	<p>② <u>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u> ----- -----.</p>
<p>③ 기여도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 ----- -----.</p>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실적</u>	2. <u>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u> ----- -----

현 행	개 정 안
<p>3. ~ 6. (생 략)</p> <p>(신 설)</p>	<p>3. ~ 6. (현행과 같음)</p> <p>7. <u>친환경 인증면적 증가실적</u></p>
<p>제13조(우선구매와 소비촉진) ①</p> <p><u>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농업 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u></p> <p>② <u>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과 농업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③ <u>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시장개척, 수출과 소비자 대상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제13조(우선구매와 소비촉진) ①</p> <p><u>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농업 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u></p> <p>② <u>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과 농업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③ <u>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의 소비촉진을 위해 시장개척, 수출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자나 학교급식 등 단체 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체험행사 등 홍보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친환경농업 평가) ① (생 략)</p> <p>② 친환경농업육성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을 평가한다.</p> <p>1. ~ 4. (생 략)</p> <p>5. <u>친환경농산물 유통, 소비 활성화 추진실적</u></p> <p>6. (생 략)</p>	<p>제14조(친환경농업 평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u> -----</p> <p>6.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Organic]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기식품등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실천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자치구 실천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